『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13호점』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8일 / 포항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2일

다. 상정일자

O 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 11. 22.) 상정 . 질의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현주 교육청소년과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다함께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제안사유

- 『K-보듬』,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다원 복합센터』생활 SOC 복합화 사업 등 다함 께돌봄센터 지속적인 확충 추진
-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성과 책임 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제안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돌봄 시설 위탁 운영)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회 동의)
- 경상북도「K-보듬」프로젝트 기본계획
-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 경상북도「K-보듬」프로젝트 기본계획

3. 위탁 대상 시설 현황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13호점 설치 예정지

연번	아파트 또는 시설명	위치	돌봄센터 면적	준공예정일
1	K 보듬 다함께돌봄센터	미정	미정	
2	대방엘리움	흥해읍 펜타시티내 (대련리, 이인리 일원)	108.6m²	2024.10.
3	한신더휴 1차	"	240m²	2024.12.
4	한신더휴 2차	"	140m²	2024.12.
5	동화아이위시	"	92.95m²	2025. 3.
6	다원복합센터	남구 오천읍 원리 1564	187m²	2025. 5.

4.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요지(전문위원 : 김경희)

- 본 동의안은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13호점의 위탁운영을 위해「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다함께돌봄센터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임.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최초 민간위탁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6개의 다함께 돌봄 센터 중 K-보듬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파트 1층 등에 온종일 공동체 돌봄이 가능하도록 공동육아 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같이 설치하여 24시 완전돌봄을 실행하고자 하는 K-보듬의 일환으로 설치예정임.
- 대방엘리움, 한신더휴 1차·2차, 동화아이위시에 설치되는 4개소의 다함께 돌봄 센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이며,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오천읍 원리에 건립예정인 다원복합센터 내에도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가 설치 예정임.
-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 및「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 8조제1항에 민간위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돌 봄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현재 운영중인 다함께돌봄센터도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상황, 안전점검, 예산집행 실태 등을 평가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도 감독을 통해 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략
- 6. 토론의 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관계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 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

- 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 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2022. 12. 6.>

1. 경로당

-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 나.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 다. 급수시설 · 취사시설 · 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 2. 어린이놀이터
-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

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3. 어린이집
-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 4. 주민운동시설
-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6.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 하게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3. 6. 17.]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이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재무· 회

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2. 위탁계약기간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돌봄 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조합·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3. 「협동조합 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③ 제1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